

행정자치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식품원료 및 첨가물 사용기준 미준수 품목제조보고 수리 부적정

기 관 명 강서구

내 용

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·가공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·군에 제품의 생산 시작 전 또는 시작 이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,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관청은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여부를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.

또한 식품 제조·가공에 사용하는 원료는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제14조 「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(이하 ‘식품공전’이라 한다)」의 제2. 1. 식품원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식품첨가물은 「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(이하, ‘식품첨가물공전’이라 한다)」의 II. 제4.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야 한다.

가.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기준 미준수

‘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’¹⁴³⁾는 식품공전 제2. 1. 2) 식품원료 판단기준 (7), ①, ㉠에 따라 가공 전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배합 시 50% 미만(배합수는 제외)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.

143) 식품공전 별표 2. 식물성 147종, 동물성 8종, 미생물 30종, 기타 12종

‘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원료’ 중 하나인 ‘울금’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 전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배합 시 50% 미만(배합수는 제외)을 사용하여야 하고,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해당 관청은 적정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반려,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○○○○과는 아래 【표 1】 과 같이 울금 사용기준을 초과(울금:59%) 한 ‘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’ 원료 적정 사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품목제조보고를 수리하였다.

【표 1】 식품원료 사용기준 미준수제품 품목제조보고 수리 명세

기관	업체명	보고일	제품명	식품유형	원재료	감사확인 사항	감사중 조치사항
○○구	○○○	2016. 8.24.	○○ ○○ ○○○	기타 엿	울금분말 (59%) 쌀조청 (41%)	제한적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 울금의 사용기준 미준수	품목보고 변경 울금분말(49%)

나.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미준수

식품첨가물의 사용은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(이하 “식품첨가물공전”이라 한다)」 Ⅱ. 제4.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
식품첨가물 중 ‘규소수지’는 거품을 없애는 목적으로 식품에 규소수지로서 0.05g/kg(0.005%) 이하를 사용 할 수 있으며, 영업자가 규소수지가 사용된 식품을 품목제조보고 하는 경우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반려,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○○○○과는 아래 【표 2】와 같이 규소수지 사용기준(0.005%)을 초과(0.2%)하여 품목제조 보고한 ○○○○○의 ‘○○○○○○○’에 대하여 식품첨가물의 적정 사용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수리하였다.

【 표2 】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미준수제품 품목제조보고 수리 명세

기관	업체명	보고일	제품명	식품유형	원재료	감사확인 사항	감사중 조치사항
○○구	○○○ ○○	2016. 10.22	○○○ ○○○	두부류	대두(95), 규소수지 (0.2), 소르비탄지 방산에스테 르(0.2) 등	식품첨가물 '규소수지 사용기준 초과(0.005% 이하)	품목보고 변경조치

조치할 사항 강서구청장은

[주의] 앞으로 식품품목제조보고 수리 시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이 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